

한화토탈에너지스(주) 대금지급관련(B2B등록)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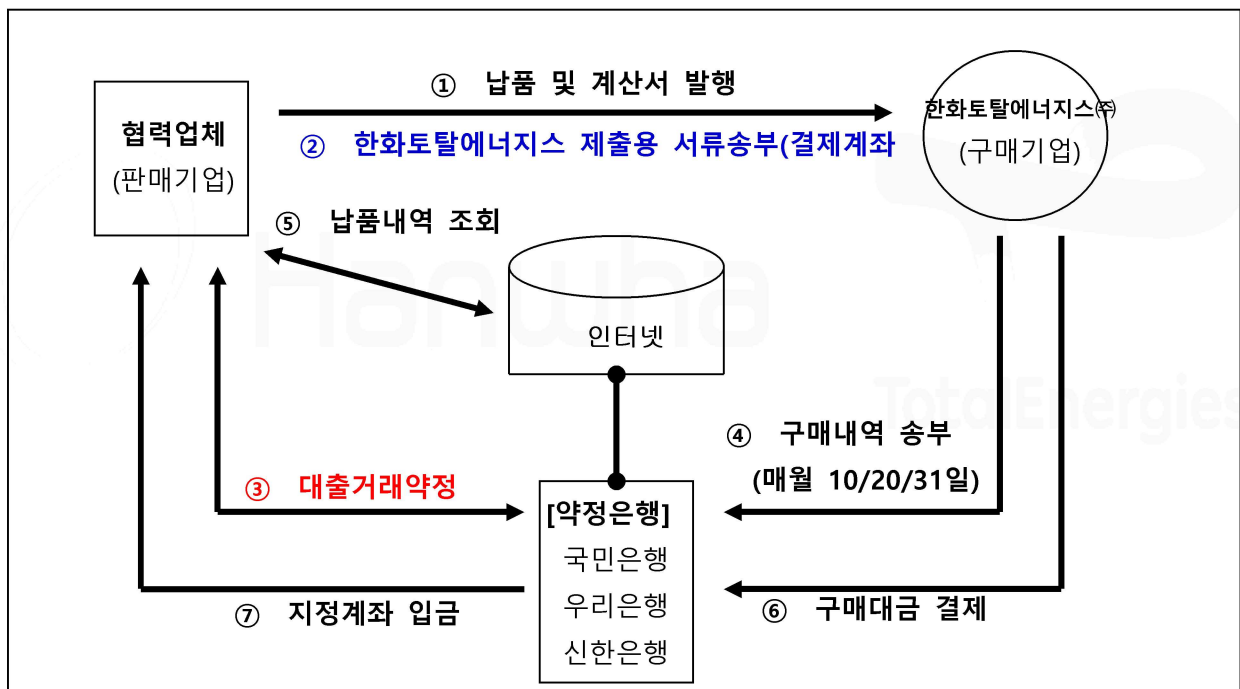
Index	1 Page
한화토탈에너지스 B2B 결제제도 안내	2~4 Page
한화토탈에너지스 제출서류 작성 예시	5~10 page
결제계좌신고서 등 한화토탈에너지스 제출서류 양식	11~13 page

B2B 결제제도 안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1. 개요

당사는 금융시장의 유동성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협력업체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B2B대출거래시스템 결제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협력업체 여러분께서는 당사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결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대금지급 FLOW



3. 개선효과

- 자금조달능력이 우수한 우량은행을 제휴금융기관으로 선정하여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합니다.
- 당사의 신용에 의한 금리결정으로 저리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협력업체의 자금필요에 따라 분할대출이 가능합니다.

4. 할인금리내역

□ 우리은행 (2011년 6월 7일 기준)

대 출 기 간	30일이하	60일이하	90일이하	180일이하
총액한도대출대상	CD + 1.8%	CD + 2.1%	CD + 2.3%	CD + 2.8%
총액한도대출대상 외	CD + 2.1%	CD + 2.4%	CD + 2.6%	CD + 3.1%

□ 국민은행 (2010년 11월 18일 기준)

대 출 기 간	30일 이내	31일~60일	61일~182일	182일 초과
가 산 금 리	CD + 1.8%	CD + 1.9%	CD + 2.0%	CD + 2.5%

□ 신한은행 (2016년 10월 31일 기준)

대 출 기 간	30일 미만	60일 미만	90일 미만	90일 이상
채 권 할 인	CD + 1.4%	CD + 1.6%	CD + 1.8%	CD + 2.0%

5. 협조사항 (작성서류 및 구비서류안내)

1. 한화토탈에너지스 제출용

- 결제계좌 신고서 (원본)
- 대금지불에 관한 약정서 (원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본)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원본)
- 결제계좌통장사본 (사본)

*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서에 날인한 인감은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하며, 계좌는 우리/국민/신한은행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2. 금융기관 제출용

- 해당구비서류준비(선택한 금융기관에 따라 준비/ 하단표참조)

금융기관	이용가능계좌	구비서류	문의처
국민은행	국민은행계좌	각 은행별 안내문 참조	콜 센터 ☎ 1588-9999 삼성센터 지점 ☎ 02-778-0111
우리은행	우리은행계좌		Business Banking Team ☎ 080-665-5000
신한은행	신한은행계좌		콜센터 ☎ 1577-8008

은행제출서류 중 B2B 대출거래 약정서는 본 제도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의 서류작성이 끝나시면

- ① 금융기관제출용 서류는 가까운 은행지점을 방문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 ② 한화토탈에너지스 제출용 서류는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화토탈에너지스(주) 서류 제출처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한화토탈에너지스(주) 회계팀
(우편번호 : 356-711)

※ 주의사항

- B2B대출거래약정은 위 2개 은행 중 1개의 은행에 등록하셔야 하며, 복수의 약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B2B대출거래약정은행과 결제계좌의 은행은 동일한 은행이어야 합니다.

결제계좌 신고서

상 호	(주)자갈치	사 업 자 등록번호	123 - 45 - 67890	☒ 본 점 ☐ 지 점
대 표 자	임꺽정			
업 태	도매	종 목	수산물	
주 소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동 해운대빌딩 10층 (우편번호 : 612 - 600)			
전 화	(051) 868 - 1245	담 당 자	홍길동	

[협력업체 정보]

* 우편번호와 담당자 성명을 반드시

약정은행은 우리/국민/신한은행
세곳만 가능합니다.

[전자 외상매출 채권 은행계좌]

예금종류	기업자유예금	 통장사본 [SAMPLE 5]의 인감과 일치
거래은행	우리 은행 해운대 지점	
계좌번호	1234 - 567 - 890123	
예 금 주	(주)자갈치	
거래은행담당자	이몽룡	
거래은행담당자 전화번호	(051) 868 - 5647	

[중소기업대상여부]

자 본 금	5,000 만원	연간매출규모	200,000 만원
기 업 규 모	☒ 중 소 기 업	☐ 대 기 업	

당사는 한화토탈에너지스주식회사와 체결한 “대금지불에 관한 약정서” 에 의거 위
은행 계좌로 거래할 것을 약속하오며 대금지급을 신청합니다.

2011 년 6 월 8 일

신 청 인: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동 해운대빌딩10층
(명 판) 주 식 회 사 자 갈 치
대 표 이 사 임 꺽 정



인감증명서
[SAMPLE 4]의
인감과 일치

인감 (개인은 개인인감)

한화토탈에너지스주식회사 귀중

대금지불에 대한 약정서

한화토탈에너지스주식회사(이하 “구매자”이라 칭한다)와 [(주) 자갈치](이하 “판매자”이라 칭한다)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납품한 물품대금의 지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정서의 “물품대금”이라 함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한 모든 용역과 재화에 대한 대금을 말한다.
2. 본 약정서의 “전자 외상매출 결제 방식”이란, 물품대금의 채무자가 자신이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결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된 채권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계좌 이체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 2조 적용 범위

1. “판매자”는 “구매자”와의 거래 종류 및 금액에 불문하고 “구매자”에 대한 물품대금은 전자 외상매출 채권 결제 방식에 의해서만 청구하고 수령할 것을 약정한다.
2. 단, “구매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전자 외상매출 채권 결제 방식 이외에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할 수 있다.

제 3조 은행계좌개설 및 서면통보

1. “판매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자”가 통지한 결제 금융기관에 물품대금 결제를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구매자”가 “결제계좌 신고서”(별첨양식)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매자”는 기존의 결제 금융기관과 전자 외상매출 채권 결제를 위한 계약이 종결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판매자”에게 새로운 결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해당 통지를 받는 후 [7]일 이내에 새로운 결제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제1항의 “결제계좌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제출한 “결제 계좌 신고서”의 기재 사항 또는 사업자 등록증의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의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물품대금 지불

1. “구매자”가 물품대금을 전자 외상매출 결제 방식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구매자”는 결제 금융기관과의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금 지불액, 결제일, 특정 여신기간 등의 자료를 결제 금융기관에게 제공하여, 결제 금융기관이 이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결제 금융기관이 “구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직접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자”는 제3조에 규정된 결제 계좌 신고서에서 “판매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물품대금을 입금하여 지급의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2. “구매자”는 위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선택에 따라 제3조에 규정된 결제 계좌 신고서에서 “판매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물품대금을 입금하여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 5조 물품 대금 지불 보류 등

1.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는 물품대금 지급의 지체에 대해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① “판매자”가 제2조에서 정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거나, 서면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②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4항에 의거 사업자의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음에도 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3조 제3항에 정한 기간 내에 “구매자”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
 - ③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한 물품대금에 대해 “판매자”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등이 집행된 경우.
2.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가)압류가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 “구매자”는 지급 보류한 금액을 (가)압류 해제 또는 취소의 효력발생 이후 최초 도래하는 “구매자”가 정기지급일에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3. “판매자”의 채권자가 채권압류 또는 추심, 전부명령에 근거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기타 물품대금에 대해서 적법한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구매자”에 대해 물품대금의 이행을 요구할 경우, “구매자”는 해당금액을 채권자 기타 제3자에 지급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6조 채권, 채무의 상계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지불할 물품대금에서 “판매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여 그 차액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조 면책

1. 본 약정에 의한 대금결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매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물품대금 미지급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②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전산장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 기타 “구매자”가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경우 및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구매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결제 금융기관에게 제공한 이후에는, “구매자” 또는 결제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하는 사취, 분실, 훼손, 지연, 오류 등의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구매자”는 제3조 제3항에 따라 “판매자”에 대한 변동사항 서면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종전 통지사항에 따른 대금지불을 할 수 있다. “구매자”는 변동사항 통보 전 종전의 통지사항에 근거하여 물품대금 지급을 한 경우, 그로 인하여 “판매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8조 약정의 변경 및 해지

1. 본 약정은 “구매자”와 “판매자” 쌍방의 서면 합의 시에는 언제든지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구매자”와 “판매자” 중 일방이 본 약정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되는 날까지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본 약정은 해지된다.

2. 본 약정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하며 일방 당사자로부터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약정 갱신거절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약정 만료일로부터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3. 본 약정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구매자”는 제4조에 의거 본 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 전에 결제 금융기관에게 자료를 제출한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본 약정에 따라 결제할 수 있다.

제 9조 효력발생

1. 본 약정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있다.

2. 본 약정은 “구매자”와 “판매자”사이에 체결된 물품대금 결제에 관한 기존 약정서에 우선한다. 본 약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존 약정서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인감증명서
[SAMPLE 4]의
인감과 일치

2011년 6 월 8 일

“구매자”

한화토탈에너지스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나 상 섭

공동대표이사 도 미 닉 빈 센 트

- ※ 첨부서류 ①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1부
③ 결제계좌 통장사본(예금계좌) -----1부

“판매자”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동 해운대빌딩10층

주식회사 (인) 법인인감 또는 개인인
대표이사 임 객 청



사 업 자 등 록 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123 - 45 - 67890

법인명(단체명) : (주) 자갈치

대 표 자 : 임꺽정

개업년월일 : 2009년 10월 21일 법인등록번호 : 180065- 0650111

사업장소재지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동 해운대빌딩 10층

본점소재지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동 해운대빌딩 10층

사업의종류 : ☐업태 도매 ☐종목 수산물

교부사유 : 사업장이전

2009 년 07 월 23 일

부산 세무서장



인 감 증 명 서



법인등록번호 : 157015-6845864



상 호 : (주)자갈치

본 점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동 해운대빌딩 10층

대표이사 임격정
(550904-1311014)

관할등기소 :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 발행등기소 :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1년 03월 25 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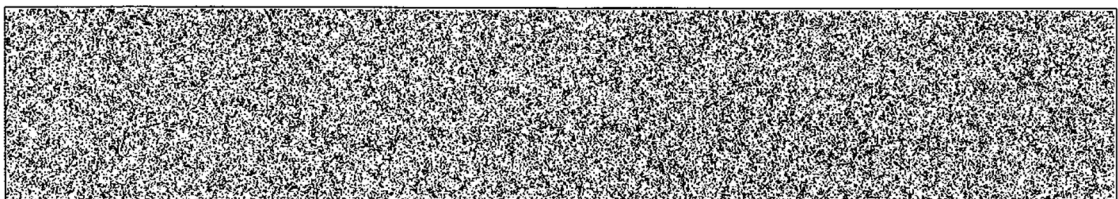
전산운영책임관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발급 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

- 1/1 -





저희 우리은행은 커진 만큼 큰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주) 자갈치

계좌번호 1234 - 567 - 890123		임격정
예금과목 기업자유예금(우리평생통장)		인감
실명확인필09- (신규발행)		서명
		인감사함
신고적번호		
계좌관리점: 지점	개설일자: 2009-	전화: 051-
통장발행점: 지점	발행일자: 2009-	전화: 051-
(이 통장은 표지를 함하여 12장입니다)		통장종서 (1000)

모바일카드	방카카드	유아보험	PC정원	자동차	약관제외	통장일련번호 001
약관내용 안내 > 이 통장의 거래에는 현금거래기본약관, 신용카드약관 및 해당 예금 개별약관을 적용하며, 우리 은행에 설치된 약관내용을 열람 또는 고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가입 20
이용안내 > 가계무대리점 등 특별금리를 지급하는 예금은 대출을 받거나 정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설정 금액에 대하여 해당일수 만의 특별금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바달번호가 확인에 누설될 경우 예금이 부정 인출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불가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 통장, 인감, 현금저금 (CD) 카드, 신용카드 등을 분실자는 바로 가까운 우리은행이나 고객만족센터, 트 신고하여 주십시오. > 신고된 서명만으로 예금을 찾으실 경우에는 예금주가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 신용PC카드 분실신고: 1688-3885						

고객센터 : ☎ 1599-5000 / 1688-5000 (해외에서 이용시 32-2-2008-5000)
고객상담 : ☎ 080-365-5000 (예금, 대출, 불만, 인터넷) / 핸드폰이용시 ☎ 02-2008-5000

결 제 계 좌 신 고 서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본 점 ☐ 지 점
대 표 자				
업 태		종 목		
주 소	(우편번호 : -)			
전 화	() -	담 당 자		

[협력업체 정보]

* 우편번호와 담당자 성명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외상매출 채권 은행계좌]

예금종류		사용인감 (통장인감)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거래은행담당자		거래은행담당자 전화번호	()

자 본 금	만원	연간매출규모	만원
기 업 규 모	☐ 중 소 기 업 ☐ 대 기 업		

[중소기업대상여부]

당사는 한화토탈에너지스주식회사와 체결한 “대금지불에 관한 약정서”에 의거 위
은행 계좌로 거래할 것을 약속하오며 대금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명 판)

(인)법인인감 (개인은 개인인감)

한화토탈에너지스주식회사 귀중

대금지불에 대한 약정서

한화토탈에너지스주식회사(이하 “구매자”이라 칭한다)와 [](이하 “판매자”이라 칭한다)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납품한 물품대금의 지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정서의 “물품대금”이라 함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한 모든 용역과 재화에 대한 대금을 말한다.
2. 본 약정서의 “전자 외상매출 결제 방식”이란, 물품대금의 채무자가 자신이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결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된 채권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계좌 이체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 2조 적용 범위

1. “판매자”는 “구매자”와의 거래 종류 및 금액에 불문하고, “구매자”에 대한 물품대금은 전자 외상매출 채권 결제 방식에 의해서만 청구하고 수령할 것을 약정한다.
2. 단, “구매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전자 외상매출 채권 결제 방식 이외에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할 수 있다.

제 3조 은행계좌개설 및 서면통보

1. “판매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자”가 통지한 결제 금융기관에 물품대금 결제를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구매자”가 “결제계좌 신고서”(별첨양식)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매자”는 기존의 결제 금융기관과 전자 외상매출 채권 결제를 위한 계약이 종결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판매자”에게 새로운 결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해당 통지를 받는 후 [7]일 이내에 새로운 결제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제1항의 “결제계좌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제출한 “결제 계좌 신고서”의 기재 사항 또는 사업자 등록증의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의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물품대금 지불

1. “구매자”가 물품대금을 전자 외상매출 결제 방식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구매자”는 결제 금융기관과의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금 지불액, 결제일, 특정 여신기간 등의 자료를 결제 금융기관에게 제공하여, 결제 금융기관이 이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결제 금융기관이 “구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직접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자”는 제3조에 규정된 결제 계좌 신고서에서 “판매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물품대금을 입금하여 지급의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2. “구매자”는 위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선택에 따라 제3조에 규정된 결제 계좌 신고서에서 “판매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물품대금을 입금하여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 5조 물품 대금 지불 보류 등

1.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는 물품대금 지급의 지체에 대해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① “판매자”가 제2조에서 정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거나, 서면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②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4항에 의거 사업자의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음에도 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3조 제3항에 정한 기간 내에 “구매자”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
 - ③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한 물품대금에 대해 “판매자”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등이 집행된 경우
2.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가)압류가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 “구매자”는 지급 보류한 금액을 (가)압류 해제 또는 취소의 효력발생 이후 최초 도래하는 “구매자”가 정기지급일에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3. “판매자”의 채권자가 채권압류 또는 추심, 전부명령에 근거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기타 물품대금에 대해서 적법한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구매자”에 대해 물품대금의 이행을 요구할 경우, “구매자”는 해당금액을 채권자 기타 제3자에 지급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6조 채권, 채무의 상계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지불할 물품대금에서 “판매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여 그 차액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조 면책

1. 본 약정에 의한 대금결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매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물품대금 미지급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②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전산장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 기타 “구매자”가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경우 및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구매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결제 금융기관에게 제공한 이후에는, “구매자” 또는 결제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하는 사취, 분실, 훼손, 지연, 오류 등의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구매자”는 제3조 제3항에 따라 “판매자”에 대한 변동사항 서면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종전 통지사항에 따른 대금지불을 할 수 있다. “구매자”는 변동사항 통보 전 종전의 통지사항에 근거하여 물품대금 지급을 한 경우, 그로 인하여 “판매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8조 약정의 변경 및 해지

1. 본 약정은 “구매자”와 “판매자” 쌍방의 서면 합의 시에는 언제든지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구매자”와 “판매자” 중 일방이 본 약정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되는 날까지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본 약정은 해지된다.

2. 본 약정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하며 일방 당사자로부터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약정 갱신거절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약정 만료일로부터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3. 본 약정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구매자”는 제4조에 의거 본 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 전에 결제 금융기관에게 자료를 제출한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본 약정에 따라 결제할 수 있다.

제 9조 효력발생

1. 본 약정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있다.

2. 본 약정은 “구매자”와 “판매자”사이에 체결된 물품대금 결제에 관한 기존 약정서에 우선한다. 본 약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존 약정서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구매자”

한화토탈에너지스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나 상 섭

공동대표이사 도미닉빈센트

“판매자”

대표이사 _____ (인) 법인인감 또는 개인인감

※ 첨부서류 ①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1부

③ 결제계좌 통장사본(예금계좌) -----1부

